

제43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6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2)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3)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0)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5)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1)
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0)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9)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1)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2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2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2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2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29.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3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4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3)
4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0)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3)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6)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7)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5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5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6)
5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7)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6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12)
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6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7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7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7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7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7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7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요청안
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
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회
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회
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7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2) 7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3)	7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0)	7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5)	7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	7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	7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7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7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0)	7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9)	7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	7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	8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8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8
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1)	8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21.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8
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8
2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8
2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8
2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8
2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8
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8
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8
29.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8
3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8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8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8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8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8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8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 8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 8	
3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 8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 8	
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4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 8	
4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3) … 8	
4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4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 8	
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 9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0) … 9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3) … 9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 9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6) … 9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7) … 9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5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 9	
5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 9	
5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6) … 9	
5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 9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 9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 9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 9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9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7)	9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6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9
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9
6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6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12)	9
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9
6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9
7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9
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9
7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7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9
7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9
7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7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9
7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10
7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10
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10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10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요청안	34
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	34
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회	34
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회	34
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92
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92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참사를 마주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화재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은 이번 주 화요일 법안심사1소위와 2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윤광일과 전현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주무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현아 주무관입니다.

문혜리 행정관입니다.

남해주 행정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2)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3)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0)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5)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1)
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0)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9)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1)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2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2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2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2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29.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3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4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3)
4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0)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3)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6)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7)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5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5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6)
5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7)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6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2)
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6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7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7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7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7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7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7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7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1항까지 8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 박홍배 의원, 전종덕 의원, 정춘생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국가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민간 분야에 한정하여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 김선교 의원, 엄태영 의원, 양부남 의원, 최기상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로 한정애 의원, 김선교 의원, 엄태영 의원, 양부남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 김성희 의원, 용혜인 의원, 윤호중 의원, 황명선 의원, 복기왕 의원, 김동아·최혁진 의원, 정태호 의원,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을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 송재봉 의원, 위성곤 의원,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한 첨부물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의원,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행위자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임용 당시로 소급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채용비위 행위자의 합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문금주 의원, 송옥주 의원, 최혁진·북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현승 의원,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핵심 기반으로 물류·금융·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개발사업의 특례와 각종 특구에 관한 근거 마련 및 교육·문화·관광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법안심사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 공무원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개정하고 약칭을 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개정하며 국가의 재향경찰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태 의원, 박덕흠 의원, 박정현 의원, 조승환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연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시도 경찰청장 등에게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정보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경찰청장 등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를 정정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등을 정하여 이 행위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내용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시행일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 등 주요 직위의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년 규정으로 인해 임기 중 퇴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 대해 연령정년을 적용 배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경비원의 정년제를 개선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과 김성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경중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추가하고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학교의 범위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등 일부 대상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로 유지하는 대신 그 금액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지역에서 인공건축물의 신설 등을

하는 자에게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하천 무단 점용에 대한 조치로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성곤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며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토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김승룡 소방청장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김승룡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8일 자로 소방청장으로 부임한 김승룡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방청은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소방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과 AI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또?

○서범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세 분. 또 있습니까?

먼저 고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법안1소위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의

견을 남겼는데 이게 글로벌 추세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법을 만든 국가를 보니까 2014년에 프랑스 사회당, 2013년 포르투갈의 사회민주당, 2011년 스페인의 사회노동당 그다음에 2011년 에콰도르의 파이스 연립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한 네 군데 정도가 일단 조사가 됐어요. 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추진해서 실제로 그 정책적 효과를 낸 적이 있는가, 효과를 나타내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서 측정상 효과적인, 제대로 연구·검토된 게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하는 점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결국 법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조직들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경쟁력 또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정부 예산에 의존하면서 운영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난 연후에 정치적 도구로 전락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그런 내용들이 오버랩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속기록에 꼭 남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연대경제 관련된 법이 1소위 우리 토의하기 전 밤 11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알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법안소위와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들이면 모를까 좀 이슈가 될 만하고 논쟁, 토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2, 3일 정도의 시간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겸……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법안심사 과정 안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회연대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유럽에 있는 협동조합 운동의 핵심적 사안인데 그것을 과잉이념화해서 특정 세력, 정치적 도구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심의를 한 심의위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를 지향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제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거고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지향성을,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

주의의 핵심적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정 세력이 정치적 도구화…… 그러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전부 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념화입니까? 저는 과도한 이념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회연대경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본이 발달되면서 소외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것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돌볼 거냐, 사회적 가치로 돌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회연대경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일을 하자는 것인데 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 자체가 특정 세력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념을 도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 수가 없고요.

저희 1소위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관련 심사를 했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지금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걸까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관련해서 사실 오늘 토론을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쟁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간단히만, 앞서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던 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사회주의 정책 추진한 겁니까? 이름에 사회가 붙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원색적인 색깔론을 펼치는 것이 국회에서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에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협동조합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 법안, 십몇 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법안에 대해서 십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런 논의가 국회 내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 유엔에서 두 번째로 지정했던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새로운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은 난점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들이 다 사회주의 국제기구들입니까? 이런 방식의 법안 논의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사회연대경제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야 하지만 국가의 한계상, 시스템의 한계상 닿지 못하는 아주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 보고 지역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대한 많은 지원들과 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이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다 공감하고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해서 사회주의 같은 색깔론을 들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펼치고요.

드디어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행안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지요, 이제.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처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사회연대경제가 더 튼튼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 행안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성희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지요?

○**김성희** 위원 예, 법안 토의로 하겠습니다.

법안 제정법을 발의했던 한 의원이기도 하고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2013년에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께서 각 당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준비팀을 만들어서 그 논의를 할 때 제가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10년 넘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까지 역임하셨던 유승민 의원도 이 법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추진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이 정리되어서 추진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는 소셜 앤 솔리더리티 이코노미(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고 해서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유엔에 사회주의 국가가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을 포함한 유수 선진국들도 다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가 된 만큼 이게 어떤 사회주의적 이념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현안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반 일리치라는 서구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동네마다 큰어머니가 계신데 이 큰어머니가 하는 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느냐? 없다’. 왜? 동네의 대소사를 다 보살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동네를 잘 돌아가게 하는데 이게 돈의 가치로는 저희가 환산을 못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시장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제3의 축으로 옛날에 큰어머니들이 하던 역할을 지금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런 데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이걸 모아 가지고 사회적경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사회주의 이념을 선포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겠다고 하는 식으로까지는 저는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아니고 경상북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을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이게 퍼주기라는 오해에 대해서만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게 보조금경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법안 논의할 때도 그렇고 저도 법안 발의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이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마다 벌어지는 공공이 투여했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도 될 것이라고 보고요. 복지비용은 절감되면서 또 지역 내 마을기업 이런 데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저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은 이 안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이 안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절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다 합의를, 상정도 합의했고 의결도 다 합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신다.

지난 민노총에서도 보니까 공휴일법 개정이 야당 간사의 반대에 의해서 부딪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가 어디일까 궁금했는데 여당 간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여당 간사님이 출처다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폐북 그리고 아침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별 근거도 없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소리도 지르고 여하튼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공론화가 안 된 상황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 심의하는 것 다 동의를 같이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쪽을 음해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간사와 협의도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야 간에 대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는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다음에 소셜벤처입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동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안부에서 윤호중 장관님이 오시면서 이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행안부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행안부에서 다 하라고요, 다 가져와 가지고. 각 부처에 있는 거를 그대로 놔 놓고 또 다른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명분하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명분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컨트롤하고 효율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서 더 문제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업무 자체가 조직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사람에 따라서 이 업무 자체가, 옛날에 윤호중 장관님이 기재위에 계실 때 기재부 쪽에서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의 반대에 의해서 못 하시다가 이제 행안부장관으로 오시면서 이걸 우리 행안부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왕 하시는 것 잘하자고요. 잘하자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옥상옥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고 또 이 업무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장관님, 한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25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20년 돼 가고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15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법이나 일반법에 의해서 각 부문의, 또 소셜벤처도 몇 년 됐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부의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체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융이 작동해야 되는데 금융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체계화가 안 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기본법이……

○**서범수 위원** 장관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체계화가 안 되는데 그에 대한 심사평가보고서라도 있습니까? 그냥 체감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그 보고서에 예를 들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행안위에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그리고 지방조세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금 진행했던 대체토론 지금 각 위원님들께 주어진 부분이 사실 5분으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발언하신 분들이 5분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pecially 이달회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예,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이번에 토론하신 분들을 다 의사진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체토론으로 생각하고 시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 고동진 위원님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신정훈 하시겠습니까? 대체토론은 나중에 하실 거지요?

○이성권 위원 예.

○이달희 위원 이 방송은, 지금 우리 회의 진행은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하게 된 계기는 현장에 가 보면 공무원들께서 출근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 쉬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은 그날 쉬고 일반 공무원들은 출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같은 건물 안에서도 은행이나 이런 데도 다 쉬니까 회계업무나 이런 걸 그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절 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국민이 근로 현장에서 하루의, 근로의식이나 이런 쪽에 고양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일찌감치 법안소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정상화, 노동 현장의 정상화, 특히 공직사회 노동의 정상화를 위해서 찬성해야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여당 위원님들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멘트에 의해서 저희가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업무방해가 될 정도로,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안소위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게 공개적으로 됐을 때 각자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하기 전에 그렇게 흘린다거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공노나 공무원노조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다 국회에 와서 앞앞이 법안소위에 들어가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해서 소통이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는 찬성하고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번에 노동절은 휴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자 폭탄을 얼마나 길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입법 절차 구조는 공무원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당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직사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절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이 국민들께 정말 좋은 행정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

○윤건영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끝났습니다, 저쪽은.

○윤건영 위원 하실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고동진 위원님께서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 대체토론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3분 내에서 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먼저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그때 법안소위 할 때 아까 서범수 위원님이 마침 이렇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반대했던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각 부처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부족한 부분은 각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야 될 일이지 이 거버넌스를 왜 행안위에 두느냐가 제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아까 블란서라든가 스페인, 에콰도르 여기는 사회 좌파 정당 맞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왜 그거하고 그거를 연결을 해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옛날에 발의한 거 맞아요, 과거에.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는 법 조항 중에 사회경제 조성을 위한 기금 설치 그다음에 우선구매 조건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국은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틀리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행안위가 만약에 사회연대 기본경제를 잘 꾸려 나갈 능력이 된다면 이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각 부처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것에 대한 시정하고 수정 내용 이전에 거버넌스를 또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수청법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성권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이 정도로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성권 위원 저는 그 내용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내용 아닙니까?

○이성권 위원 예,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위원님, 마찬가지로습니까?

○윤건영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1분만 쓰십시오.

○윤건영 위원 먼저 이성권 위원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저는 다른 법안 때문에……

○위원장 신정훈 아니, 다른 내용이랍니다.

○이성권 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 자료를 너무 늦게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상정 협의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날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법안심사소위 안건을 미리미리 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노동절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상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은 맞잖아요.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처지도 이해하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정정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정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걸 기록 차원에서 남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냥 사회연대경제 관련해서 짧게……

○**위원장 신정훈** 짧게 한 2분만 하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범수 간사님 그리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사회연대경제를 왜, 이 사안을 왜 행안위에 두느냐, 행안부가 관할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본법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각 관할 부처가 다르고 사회적금융 또 공제조합까지, 어느 영역까지 사회적경제로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물론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유엔의 결의 그 내용에도 보면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기본법,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진흥하는 데 있어서 국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방의 어떤 고유한 특성 이런 것을 살리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법들을 가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별적으로 부처의 독립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각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특히나 현장에서,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처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일종의 행정안전부는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사회연대경제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두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과 지방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이 일을 맡아서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기대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법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이 됐고요.

제가 대표발의를 한 법이기는 합니까만 제가 장관이 된 것에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행안부의 소관 법률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지만 좌파 정당까지 논의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선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조합의 형태도 있고 모임의 형태도 있고. 다양한 유형,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의 활동들은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공동

체까지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을 보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소중한 활동가들의 땀방울들이 이어져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라는 것 또 사회연대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방자치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다양한 이런 사회적 기여와 또 공익적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지원방안, 기준들을 마련해 내는 법안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단지 사회적경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그야말로 소멸에 직면해 있는 현장의 골목과 마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함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이렇게 그만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1분만.

○위원장 신정훈 이 이야기를 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서범수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드렸으니까……

○서범수 위원 1분만 주시면 딱 5분……

○이성권 위원 제 것 5분 중에서 1분 드릴 테니까 1분 주십시오.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1분만.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서범수 위원 장관님, 장관님의 논리라면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업무 중에 중앙부처에서 가는 업무는 전부 행안부를 거쳐서 가야 조율이 되고 효율화되고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다른 중앙부처의, 그러니까 행안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조율하고 이러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위임되는 업무 자체는 전부 행안부를 거쳐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괜히,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직거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거기 중간에 행안부가 들어서서 한 단계를 더 거처가면 이거야말로 옥상옥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범수 위원 효율화를 빙자해서 오히려 더 옥상옥의 문제가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효율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서범수 위원** 다른 부처보다 행안부가 더 우수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논리잖아요, 행안부는. 다른 부처는 옳게 관리를 안 하니 행안부가 들어가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지방자치 현장을 보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동진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강남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주로 일자리 많고 이런 지역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실제로 울주군이 농촌지역이고 그 현장을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인구 소멸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범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구소멸이 안 될 것 같아요, 행안부가 들어간다고?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신정훈** 자,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고동진 위원** 아니, 그리고 장관님, 강남 산다고 지방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이 왜 그런 식으로 차별화시키냐고요, 여기서?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이제 좀 중단해 주시지요.

○**이해식 위원**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료 위원 말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장관 이야기를 동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위원장 신정훈** 저는 지방 출신의 의원으로서 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 이야기만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소멸되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원칙보다 현실이 더 열악하고 시급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되어야만 잘할 수 있는냐는 논리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각 부처에 맡겨 놓으면 되지.

○**위원장 신정훈** 그 이야기를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도 중립을 좀 지켜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컨트롤타워가.

○**서범수 위원** 컨트롤타워가 없어도 중앙부처에서 직접 자치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효율화되지 않아요.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이광희 위원** 70년 동안 해 왔는데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현장의 책임자로서 일해 본 제 입장에서 보면 행안부는 지방의 조례, 제도 그리고 예산 편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지방소멸에 있어서 행안부의 역할은 이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책임과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행안부에서 틀어쥐고 정말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달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이 대채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여타 법안에 대한 대채토론,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몇 가지 질문과 당부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말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 서범수 간사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유감의 뜻도 표합니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특별법들은 우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인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일 먼저 5월 31일 날 발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올라와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역특별법 중에 제일 늦게 통과가 되고 있고,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된 게 중간에 빛의 속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장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부산시와 행안부가 함께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 부처 간의 조율까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존재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히나 부산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고, 작년 정기국회 중에 신정훈 위원장님을 찾아오셨지만 박형준 시장께서 부산시민 16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의 열망을 담은 것까지 전달이 되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급속도를 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박형준 시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를 내었고, 그 과정을 보면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그냥 하루 만에 당대표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고 하면서 ‘다 해냈습니다’,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새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정당이라는 것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은 아쉽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한마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오늘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2024년도 초부터 해서 행안부차관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정부부처의 의견들을 다 조율을 끝내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성안된 법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사실상 행안부 입장에서든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요동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거는 국회가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는, 장관의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이 법안 중에서 가장…… 이제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까지 가면 정식으로 통과가 될 건데 가장 핵심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글로벌허브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권 위원** 맞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법안 내용에 보면 금융·물류특구 지정 및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지구 등의 조성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라는 것을 바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법안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그것까지는…… 추진위원장이지요, 지금까지는.

○**이성권 위원** 정식적인 위원장으로 해야 될 분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와 그리고 위원장 포함해서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제가 사실상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이 법을 만들 때 행안부가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부산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북 그리고 강원, 동시에 제주도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을 다 다루고 있는 행안부인 만큼 지역의 소멸 위험,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토론을 좀 해야겠는데요.

○**위원장 신정훈** 대체토론입니까?

○**이해식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아까 참고로 제가, 전체적으로 5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만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5분 주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5분이요?

그때 어떻게 했지요?

5분 하십시오. 아까 1분 드린 것 같은데……

○이해식 위원 그러면 4분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위성곤 위원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5극 3특이고, 이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때는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여져 있어서 5극 2특이지요. 그러니까 5 플러스 2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지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성장전략이고, 이것은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도 대통령선거 공약이었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공약하에서 행정통합법이 발의가 됐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충남·대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발해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경북도 잘 추진이 안 됐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5극 3특이라고 하는 전략 속에서 가고 있는 건데 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특자도법하고 다릅니다.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도 그야말로 3특, 특별자치도법이지요. 그런데 부산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서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지방선거 전까지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다 행정 연합하자고 서명했고 예산까지 반영했고 협약 체결했고 다 그랬는데 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무시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부산만 이런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부울경이라고 하는 5극 3특 중에 가장 중요한 극인데, 서울·수도권과 비견될 만한 부울경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인데 부산만 가게 되면 경남이나 울산이 어떻게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당시에 사실은 좀 우려가 있었어요. 부산이 너무 앞서가고 그리고 이게 결국 부산 좋은 일 아니냐, 부산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부산법을 독자적으로 통과를 시키면 과연 5극 3특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울경 축이 제대로 형성이 되겠느냐, 저는 이게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성권 위원님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적인 맥락도 그런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특히 경남이나 울산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이라고 하는 축은 이런

광역연합 혹은 메가시티 전략으로 저는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사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에 주어지는 행정특례, 재정특례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런 행정특례 못지않은 특례를 경남과 울산도 공히 부여하고 그런 기반 조성을 통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울경을 한 축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또 행정통합 논의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신정훈**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위성곤입니까, 이성권입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성권 위원님.

1분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어제 법안소위 때 충분히 토론한 내용인데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형태로써 부울경 메가시티 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추진되어 왔고 거기다가 더 고위의 수준인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위해서 지금 로드맵을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고 울산도 행정통합에 합류하겠다고 선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마치고 나면 부울경 메가시티와 똑같은, 이름만 다를 뿐인 내용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별법에 대해서 경남과 울산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물류의 경우는 경남과 그리고 또 울산에 있는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혜택을 똑같이 봅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도 부산, 경남뿐만 아니고 울산도 똑같이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의 발전을 차단하는 법이 아니고 남부권에 경제성장 축을 만드는 데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법안이라는 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3분.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윤호중 장관님, 법안 통과 이후에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무관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주무관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주무관이 재량의 범주 안에서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래서, 주무관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된다 이래서 주무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지요, 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규정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상의 기준이 되는 현상인데 이게 많습시다, 사실은. 실태조사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지침이 모호한 경우에 그래서 주무관이 해석

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관도 힘들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 규정 적용을 아주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힘들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규정에 근거해서 재량의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국민도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법·조례가 추상적으로 만들어졌고 하위지침이 부재하거나 또는 비공개돼 있거나 공직자는 아는데 민원인이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규정을 내놓으라고 하면 없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재량행정이 과다한 것 그리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성곤 위원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코드화하고 법과 지침에 따라서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면 공직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부 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행규칙 밑에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는데 그게 서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관이 왔다가 인사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가면 ‘왜 다르냐?’ 하면 ‘내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 사례를 정리해서 구체적 기준에 근거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공직자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고 민원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뉴얼이 공개돼 있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석이조가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주무관법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민원인,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6급 그다음에 7급 그다음에 5급들이……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구체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행동 매뉴얼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토론을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요 고동진 위원님 신상발언 1분 쓰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아까 장관께서 ‘강남이라 그래 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좀 적을 수 있

습니다만’……

○**고동진 위원** 아니, 내가 40년 직장생활 하면서 수원에서 17년, 구미에서 한 10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행안부 말고도 모든 부처가 각 지방마다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돌아가면…… 절대 공무원을 편휘하는 건 아니고 그 단위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면, 나는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그게 내 신조예요. 그래서 잘되는 데는 더 잘하게 하고 못되는 데는 좀 수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가 또 엇어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경험상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가 시민 참여, 그러니까 주민 참여 그다음에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국제적인 회의나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이 행안부가 이 업무를 맡게 됐다라고 하는 주제 발표나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경제부처들이 실제로 지방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 장관께서도 강남은 역차별하지 맙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30항과 의사일정 53항은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대안)부터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제명부터 제2장 10조까지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장 제11조부터 제4장 18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장 제19조부터 제7장제28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법안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0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의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의 제명부터 제2장제12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장제13조부터 제4장제5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장제54조부터 제7장제8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안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3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0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범수 위원 반대합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기록에 남기고 그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므로 기록에 남기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1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4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2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이현승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6항 대한민국재향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6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3항 도로교통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과 6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6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2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및 제7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5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및 제8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2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회연대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비전과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상습적인 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윤건영 제1소위 위원장님과 서범수 제2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한편, 정부가 육아 정책의 모범적 고용주로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여 저출생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첩업무를 경찰관의 직무에 명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룡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김승룡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통해 소방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신속하게 첨단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급변하는 재난환경에서 더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과 두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곧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요청안

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

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회

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회

(11시47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82항부터 85항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윤광일 그리고 전현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서범수 위원 6·3 아니에요? 왜 6·2예요? 위원장님, 6·2 지방선거 하시나요?

○위원장 **신정훈** 다시 중간에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한 두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를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분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 그리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절차가 종료된 후에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전현정 후보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드신 후 윤광일 후보자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마무리되면 두 분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공직후보자 윤광일

공직후보자 전현정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광일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과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선거와 정당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이후 강단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며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아 왔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주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리고 선거제도와 정치 경쟁이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나아가 어떻게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선거와 여론, 정당정치,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에서 선거 경쟁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제 선거제도와 선거 관리가 국민 대표성과 정치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지역 대표성과 인구 균형, 정치 경쟁의 공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접하면서 선거제도와 선거 관리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보 환경의 변화가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정보·선거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소임이 부여된다면 무엇보다 헌

법과 법률에 근거한 중립적 선거 관리 원칙을 충실히 지킵겠습니다.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며 선거 결과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거제도와 선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제도적 관점에서 차분히 살피고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안정적인 민주주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해 주신다면 그동안 연구자로서 축적해 온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선거제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정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국정 현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제 인사청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엄중한 검증을 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헌법적 책무를 맡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고견은 곧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고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32년 동안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재판을 하며 제가 늘 마음에 새겼던 것은 공정과 정의 그리고 균형입니다.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리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재판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믿음이 들 때 비로소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가능해집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무겁고 가벼운 것을 재는 도구로서 균형을 상징합니다. 개인적인 인정이나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편견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서로 대립하는 이익이나 가치를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관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관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만 선거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관리하는 헌법기관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저는 청주시 상당구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선거 현장의 치열함과 절차 관리의 엄중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객관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며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없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도 민주주의 원리도 설 땅이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며 변화하는 선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거나 왜곡하는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어떤 오해나 불편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절차를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문턱 없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재외국민 등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과 제도적 배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오직 공정하고 흠결 없는 선거 관리를 통해서만 다시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쌍방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을 때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임이 맡겨진다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라는

가치를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선거제도가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인사청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들로부터 모두발언까지 들었습니다만 점심 식사 관계로……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신정훈 그럴까요?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뒤에 김인수 기획국장님, 박세진 법제국장님, 조봉기 조사국장님, 문옥두 기획재정과장님, 어떤 자격으로 나오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김인수 후보자 청문회 지원팀장으로 왔습니다.

○서범수 위원 뭐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김인수 후보자 청문회 지원팀장으로……

○서범수 위원 청문회팀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김인수 예.

○서범수 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김인수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위철환 상임위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후보자입니다, 두 분은. 선관위 위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국가기관은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처나 이런 데는 청문회팀을 만들어서 거기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하는데 선관위는 전체가…… 보세요. 기획국장 들어왔고 법제국장 들어오고 조사국장 들어오고, 중앙선관위의 핵심 국장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중앙선관위 위원이 아닌데 중앙선관위의 위원처럼 지금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위철환 상임위원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청문회팀 구성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시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구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윤광일·전현정 두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 다 학자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정치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바로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현은 아마 학자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다’ 또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총알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역사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들어와서 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학식을 뛰어넘어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학자의 관점에서 또 선거나 정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골간이 되는 기제인데 이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무결성을 지향하는 그런 진정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런 부정선거의……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음모론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기하는, 무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죄송합니다.

○이성권 위원 계속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제가 학자로서 어떤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제기하신 대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소수가 아니라 적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가능하면 팩트 체크에 있어서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팩트 체크는 사후에 하는 것 자체가 사전보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촘촘하게 그 논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선관위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진정한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 된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윤광일 후보자의 견해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유가 없이 음모론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완벽한 선거 관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씩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처해 온 방식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사실 복잡한 심경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공부도 해 왔지만 선관위 활동에 대해서 그래도 가까이 본 학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청렴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가까이서 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도 시행에 있어서 무결성을 지향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감히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것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규제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인간이 실수를 줄여 나가면서 시행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권 위원**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이 되시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철저하게 찾아봐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현정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주장돼 왔고 대법원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관리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 이런 부분은 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선거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하기 위해서 PPT에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부정선거 부분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 버려서 그것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 자체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께서 계엄을 일으키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들어갔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복합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두 분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선관위원 윤광일 후보자님, 전현정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윤광일 후보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내일모레 3월 28일 날 강릉아레나에서 있을 강원 도정보고회입니다. 보이시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강릉시축구협회가 각 팀에 발송한 안내 내용을 줄 그은 것대로 다가 보여 드릴게요. ‘각 팀 20명 이상 참석하기로 협의’ 이건 사전협약에 속합니다. 그렇지요? ‘행사 협조 시 1000만~2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건 예산이 연계된 행사입니다. ‘참석인원 미달 시 불이익이 가능하다’ 불이익 언급이 결합된 그런 구조입니다. 돈도 주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불이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반한 사실상 동원 구조라고 보이는데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공직선거법의 9조, 85조, 86조에 보면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돼 있는, 또한 행정권한을 이용한 행사 운영은 제한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행위를 단순 행정협조라고 보는지 아니면 선거 영향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광일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것이 사실 적절한지에 대한……

○**이광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시 앞에 좀 보여 주세요.

이 도정보고회가 내일모레 있고요 지금 강릉시축구협회에서 안내해 드린 게 공문으로 다 나갔어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말씀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안 되지요. 이 상황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해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 위원이지 않아요.

(「아직 아니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 되면…… 지금 후보자로 오신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 행사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5000명이 모여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이번 선거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내일모레 출마하신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분이 이런 동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상 문제가 있느냐고 여쭙았는데 그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모른다는 답변보다는 제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광희 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음 전현정 후보자님께 여쭙겠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도정보고회나 시정보고회……

공직선거법에 보면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이 있어요. 누구든 선거일 90일 전에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도정보고회나 시정보고회 등은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당장 지금 선거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출판기념회는 금지가 됐는데 유사한 효과를, 유사한 효과 정도가 아니지요. 아까 사진 보시면 5000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허용되는 구조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정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행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서 조금 다른 차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지금 이와 관련된 거는요, 특히 도정보고회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90일 전까지 선거후보자들은 아무 행사도 못 하는 건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이광희 위원** 출판기념회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00명씩이나 모아 놓고서 하는 행사를 현직 단체장은 할 수 있고 선거 최근까지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명백히 양자가 괴리된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여기에 동원 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등이 다 포함돼요. 지역의 소위 여론 주도층들은 다 포함이 돼서 동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선거에 그 어느 것보다도 영향과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요 이 도정보고회·시정보고회 유사행위도 90일부터 제한한다는,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제한한다는 법 개정을 제가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를 다 풀거나 아니면 2개 다 제한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두 후보자님께 연거푸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선거 때는 아주 작은 어떤 것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지요. 그런 예민할 때 공개적인 그런 합법적 대형 보고대회가 가능하다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어떤 허점들을 이용해서 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윤광일 후보자님, 학교에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도 교단에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학교에서 수업이나,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요새 AI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PPT 한번 보면 이게 선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82조……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12월 8일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1항 선거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 기술을 활용, 사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을 좀 들어 보고 싶은데, AI로 만들어진 영상이란 직접 만든 영상이란 간에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이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돼야 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의 이미지는 우리 의원실에서 만든 거고 오른쪽에는 AI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AI가 제작한 이미지다’ 이렇게 써 놔는데 이게 보면 그렇게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 내용을 봤을 때 AI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준다거나 허위사실 공표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82조의8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는 AI 영상에 대한 표기 의무는 현재로서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법적으로는 크게 나와 있지 않고 얼마 전에 장철민 위원께서 ‘이것까지도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해 보면 합법적인,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도 아끼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선거 91일 전까지는 합법이었던가 하루 차이로 이게 불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AI 기술을 사용자가 악용하는 게 아니라면 제재하지 않고, 악용을 하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이게 딱 누구든지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다음에 ‘AI 표기했어’ 그러면 이것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답변……

○고동진 위원 예,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AI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로 제작한 이미지가 비용 절감이라든지 선거운동에 있어서 변화하는 첨단 환경에 적응하는 선도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걸 꼭 규제 내지는 처벌 위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법과 제도를 존중하지만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규제

위주로 가는 건 문제가 있고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표기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실증적으로 공신력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이 문구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선거 홍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건지 이것은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정의를 내리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능동적으로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라는 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도 다른 어떤 AI로 제작한,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지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허위정보다라고 단언하는 데 더 기여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관련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 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고동진 위원** 옆에 계신 전현정 후보자님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선관위 서면답변하신 내용 중에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고동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앞에 질문한 기간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의견을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는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또 선거운동의 효율성 이런 측면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선관위에서 우려하는 바는 허위정보의 경우에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자 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공직선거법상 지금 현재 상태의 규제는 조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윤광일 후보자님한테, PPT를 보시면 22년도 지방선거 때도 분명히 AI를 활용한 운동을 했겠지만 법조항 부재로 22대 총선부터 삭제 요청하고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90일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하면서 창의적인 제작물로 선거운동, 그러니까 악의적인 게 아닌 이런 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법적 조치를 받거나 경고받고 이런 게 1년 사이에 한 3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82조는 어떤 게시물의 불법 유무보다 AI 기술을 사용해서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은 단지 선거법 위반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인찍는 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자율에 맡기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세요. 두 분 같이 해 주세요, 순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위원님의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규제 위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동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울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두 분 후보자님, 후보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전현정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의 폭동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지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한 그 목적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일에 대한 어떤 감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행정부처나 법원은 포함되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또 점검한 행위는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광일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당이 있고 시도당까지만 법정 당으로 돼 있습니다. 지구당은 폐지가 됐지요. 그래서 사실 지구당은 현실적으로는 편법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지난 21대 국회 때도 지구당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원을 고용을 하고 일정 정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시다. 지금도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또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여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비용 구조 때문에 없었던 건데 그러면 과연 그런 문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완벽을 기하도록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 사무원 고용이나 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구당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되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전현정 후보자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정당법 44조, 그때는 41조였는데 지금은 44조인데 정당 등록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특히 44조 3호에 있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를 못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째 위헌 상태는 방치되고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한데.

전현정 후보님, 그때 당시 현재 결정문을 보면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이런 문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2회 혹은 3회 그리고 득표율을 현행 2%에서 1% 혹은 0.5% 이렇게 낮춘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취지,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똑 부러지게 답변은 못 하시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가 정당에 관한 조항이지요. 이 8조에 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라고 하는 게 1항에 나와 있는 거고 2항을 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게 우리 헌법 8조 2항입니다.

그런데 정당 등록취소 사유는 이런 어떤 형식적 요건, 그러니까 시도당 5개가 안 된다든지 법정 당원 수가 각 1000명에 미달한다든지 이런 경우 혹은 아까 말씀드린 3항 3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의사형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지 그냥 패이퍼만 구비한다든지 정강정책이 서류로는 있는데 그리고 또 당헌·당규가 서류로는 있는데 그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당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등록취소 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현수막을 걸기 위한 그런 목적의 정당을 만들어서 갖가지 가짜뉴스, 혐오, 특히 윤 어게인이라든가 이런 현수막들을 아주 무분별하게 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정당들은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지만 헌법 8조 2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당이라는 말이에요. 정당법에다가 이런 정당들의 문제점, 8조 2항에 따른 구체적인 조항들을 정당법에 규정을 해서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정부가 제소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게 결정할 일이지만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 요건 이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질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정당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가지고 정당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사무를 다루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반드시 그 부분은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전현정 후보님께……

축하드립니다. 우선 두 분 다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PT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보통, 그러니까 선거운동원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지지를 표시할 수 있는 소품의 크기를, 규격을 규정한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밑에 보면 이번 6월 달에 정치관계법 사례집, 동시선거를 위해서 나온 책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규격 범위, 길이, 너비, 높이 각 25센티미터. 없던 ‘각’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거든요.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이 ‘각’ 자 하나를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선거관리규칙에도 없는 글자를 넣어 놨거든요, 이 예시집에.

(소품을 들어 보이며)

제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길이, 너비, 높이 하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물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범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크기로 안 하고요 이 반 크기로 합니다. 반 크기로 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에도 뭘 쓸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소품이라는 것은 저기에서 말하는 길이, 너비, 높이……

○권철승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은 입체적인 소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평면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규칙에 의하면 길이, 너비 이것이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즈가 더 큰데도 괜찮고 또 오히려 더 작은 사이즈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권철승 위원 ‘각’ 자가 없으면 그냥 느낌상 이것도 허용할 것 같아요.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2배나 큰 것도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반밖에 안 되는 것을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하여튼 규칙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규정을……

○권철승 위원 아니요, 그래서 유권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책이. 전부 이것 보고 준비를 하거든요. ‘각’ 자를 넣어 놔다니까요, 없는 것을. 그걸 왜 넣어 놔을까? 예를 들면 이 면적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나면요 이게 A4 용지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A4 용지가 안 돼요. 보통 종이에다가 ‘나 누구 지지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하나 프린트해 가지고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A4 용지를 25cm에 맞춰서 잘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권철승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상식에 안 맞잖아요. 이만한 것은 들고 와도 되는데 이것 반 쪼개면 안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범조인이시니까 좀 상식에 맞게 선관위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말씀하신 취지 잘 헤아려서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살펴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 정도 보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철승 위원 그다음에 윤광일 후보자님, 옛날에 선거구획정위원회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권철승 위원 획정위원 하셨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기준을 너무 늦게 보내 줘 가지고 마지막에 졸속으로 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적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런데 저는 대변인으로서……

○권철승 위원 어쨌거나 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런 취지로 말씀……

○권철승 위원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그것 엄청난 오해입니다.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국회가 기준을 만들어서 먼저 보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맞습니다.

○권철승 위원 획정위원회가 획정을 해서 국회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국회가 먼저 교섭단체들끼리 합의해서 보내 주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게 서로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국회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획정위도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획정 그 기준이 선거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만으로도 얼마든지 획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 획정해서 국회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획정위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권철승 위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에 보면 선거구 획정하는 절차가 다 나와 있는데 처음 딱 시작이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내용적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과는 다르고, 획정위가 앞으로 그 책임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3개월 전에 선거구를 새로 바꾸면,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게 되면 현장에서 상당한 우려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폭 줄여야 된다. 13개월 전부터 미리 할 게 아니고 한 6개월 전 정도까지만 확정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그 부분도 선관위원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살펴보실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권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 위원입니다.

윤광일·전현정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광일 후보자님 인사말씀에서도 국민통합에 대해서 우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PPT 한번 보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식조사에서 보면 ‘공정하다’ 49.7%, ‘공정·투명하지 못하다’ 47.1% 가까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점을 보면 선거가 통합과 요즘 사회에 너무 요원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까 윤광일 후보께서 무결성을 지향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팩트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이달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서면질의했을 때 두 분 다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을 굉장히 소신 있게 말씀도 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전 후보자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이달희 위원 그러면 윤광일 교수님께, 후보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의 윤리심판위원장을 하고 또 어떤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공명선거본부장을 하면 이분은 아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그 대선후보랑 좀 친밀한, 정치적으로 좀 친밀해 보입니까? 어떠세요? 윤광일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좀 답변하기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달희 위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현정 후보자님,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1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에 공정해야 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진정성 있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가자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중립성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에는 윤 후보자님 공감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앞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한, 여러분이 여기에서

통과해서 들어가시면 함께 일을 할, 그것도 상임으로 일하고 계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 위철환 위원은 상임으로 일하고 두 분은 비상임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치적인 중립을…… 저희들은 중립성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라고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습니다. 함께 일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중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행법상은 전 이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 후보자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법관 임용이나 헌법재판소 위원 임명에도 정치적인 이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요? 경우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정당 활동 몇 년 이상 한, 그런 근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신 분이 되신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위원회 활동을 보면 2025년에 위원회가 열일곱 번 열렸습니다. 비상임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일곱 번 열렸는데 94건을 심의를 하고,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기구입니다. 그런데 1건도 부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수기 위원회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임 선거관리위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력상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력상 그분이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일하기를 바라면서 두 분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회의, 21년도 13차, 22년도 21차례, 23년도 16차례, 24년 16차, 이렇게 많은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의견은 인사 한 의결 7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거 관리 의무, 임무 그리고 정당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신껏 발표해 주시고 소명의식까지 가지신다고 전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거수기 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아니고 제대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가지고 이 모든 사안이 처리되는지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자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오기 전의 정당 이력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력이 없는 중립 인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올 수 있도록 입법을 했습니다.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각 한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그 어떠한 제도나 어떤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더 촘촘하게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거에서 공정하게 패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두 분.

여기 국회 오시면서 여의도에 또 근처에 보면 현수막들이 많지요? 거기 보면 보기에다 약간 불편한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두 분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고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광일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헌법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소수정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가치의 균형을 아주 어렵게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표현의 자유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 혐오 표현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현수막까지도 용인해 왔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기는 어렵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 2개의 가치를 같이 균형 있게 지켜 나가는 방안으로 좀 지혜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전현정 후보자님도 어떤, 비슷한 생각이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는 현수막이 매우 난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게 하면서도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나 미풍양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지나친 허위사실 또는 혐오 이런 것은 옥외광고물법상으로도 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두 후보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관련 입법, 옥외광고물법의 어떤 한계 때문에 정당법이나 옥외광고물법에 지금 입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법들이 발의가 됐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가 그동안에 너무 소극적인 법 해석과 또 집행을 한 것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내일로미래로당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왜 고발 조치를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당의 등록·변경·활동·소멸에 대한 감독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선관위에서는 조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결국 국감 이후에 선관위에서는 정당의 등록 관련해 가지고 허위 신청·보고 혐의로 고발을 최초로 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물론 진전했지만 그런데 지금도 소극적인 법 해석에 선관위가 직무를 회피하는 일 아닌가라는 일이 있는데 이제 법이 입법화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두 분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 그러니까 향후에 위원이 되신다면 이런 시위나 대집행이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의지 또 헌법수호 의지, 물론 표현의 자유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근 5년 내에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국민통합,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갈등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두 분 후보자님께, 먼저 전현정 후보자님께 부정선거론, 유튜브나 SNS 이런 허위·왜곡 정보 이런 것의 만연함, 특히 부정선거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횡행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정치적 대립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이런 부분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확증편향 이런 것들을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도 그런 원인의 진단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고교생 10명 중 4명이 개표 부정을 믿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저는 결국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 더 나아가서는 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 등에서 학교 단위 모의투표가 가능하나, 선거교육 가능하나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위반이다, 우려 있다. 그런데 다만 시민단체의 교육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박스쿨 같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단체가 선거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학교가 선거교육, 투표 인식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정 위원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정보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거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위원으로 취임하시면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를 해서 학교 내 체계적인 선거교육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전담 TF 이것을 선관위 내에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전현정 후보님, 로펌 몇 년 다니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로펌을 한 9년가량 다닌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수임 내역하고 자문 내역을 요구했는데 왜 안 내 주십니까,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데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서범수 위원 고객에 대한 비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또 아마 지방변호사회에서 보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고객에 대한 비밀 이게 제일 큰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2조에 자료제출 의무가 타법보다 우선되어 있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임한 사건이나 자문한 내역이 과연 군사나 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은 아니겠지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잠깐만요. 후보자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제출은 저한테 하는 거니까요.

○서범수 위원 좋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위임을, 위탁을 받은 분들의 비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내겠다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9년 동안 로펌에 계시면서 수임한 건수 및 수임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윤건영 아니, 후보자님은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서범수 위원 내역에 대한 부분을 내가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임 건수와 수임료 금액 건만 자료를 바로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건영 전현정 후보께서는 방금 서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되는 건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윤광일 후보자님 그리고 전현정 후보자님, 후보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공정과 중립성.

○서범수 위원 그렇겠지요. 공정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이겠지요. 그래서 두 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의 한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먼저 말씀……

○서범수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공정과 중립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중요하고 외견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이나 중립성보다 선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지만 위원이 된다면 지고의 가치로서 지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현정 후보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도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선거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 기둥이고 또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현정 후보자님, 2020년 공수처 출범 당시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셨지요? 두 분 중의 한 분으로 추천을 받으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한 6명 정도 추천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서범수 위원 그중에 두 분이 유력하다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후보 추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셨는데 혹시 사유가 뭔지 들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에서 약간의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서범수 위원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그 당시에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부담을 느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후보로 추천한 분이 누구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후보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서범수 위원 추미애 의원님하고, 그때 추미애 장관님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특별한 인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추미애 장관님과 는 개별적인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개별적 인연이 없는데 전현정 후보님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을 하셨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는 생각하기에 그 밑에 계시는, 법무부에 여러 법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서범수 위원 나중에라도 법무부장관한테 왜 저냐고 물어는 봤을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 본 적이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전혀 본인하고는 없었다?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서범수 위원 납득되나요,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전혀 전화번호도 모르고……

○서범수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추미애 의원이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옵니다. 그러면 전현정 후보님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면 추미애 의원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후보가…… 본선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와의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그 당시에 개인으로서 개인 자격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에서 저를 추천하였던 것이고요.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하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을 했 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혹시 추미애 후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서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볼 것이냐, 뭔가 다른 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는 공정하게 처리할 의사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거야 그렇겠지요, 지금은.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것은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추미애 의원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 되면 기피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쭙았는데 여기 선관위 관련해서 의결에서 회피나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들이 그런 것과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제가 답변 들은 바는 있지만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쭙보는 게 아까 이달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혹시 선관위원으로 되시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말씀하신 취지 유념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현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집 몇 채 갖고 계시지요, 세 채? 다주택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2024년까지……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

고 있지 않고……

○**서범수 위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은 있으나 여하튼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2024년까지는 한 주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4분의 1 지분으로 배우자가 두 채 소유하게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업무도 배제를 하고 또 국토부의 1급 실장한 분도 사표를 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마다의 다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다시피 다주택자도 나름대로 보면 후보자님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악마화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 판단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전현정 후보께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 배우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생각이 제 지위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두 채 중의 한 채는 이미 시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보다도 주도적으로 재산을 행사하시는데 이미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두 분 후보자 지명 축하드리면서, 지금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또 경험 등으로 봤을 때 헌법적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윤광일 후보님께 주로 제도와 관련해서 내용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 미만의 자치 시군에 대해서 최소 1명을 배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장수군에 1명을 배정한 것이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냈거든요. 어디에서 이 문제 원인을 찾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깊게 고민해 본 문제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인구 비례의 원칙을 지역의 대표성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거든요. 통계의 흐름으로 보면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그것을 대응하지 못한 것은……

현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라든지 국회의원 획정위원회는 있는데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선거구 획정 절차가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후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의 처방책, 물론 광역의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뒤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이재관 위원** 그리고 전현정 후보님께, 아까 인사말씀 중에 보면 재외국민이라든지 취약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현재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과연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지난번 21대 대선 때의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79.5%로 가장 높은데 실제 재외 선거권자 수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 또 그 나라와 우리의 임시공휴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대안이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재외국민의 참정권 그리고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그런 것이, 투표소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이재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를 높인다고 하는 게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생각하는 어떤 대안으로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투표소를 좀 더 만들고 그런 부분. 그리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우편투표나 또는 전자투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혹시 우려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충분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해서 그 대안, 훌륭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많은 제도에서 문제없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IT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우편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런 의혹의 문제 때문에 이런 제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이재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현정 후보님께서 아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공표라든지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전현정** 선거 여론조사가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유권자의 판단이나 선택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제도 밖,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탈법적인 어떤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제도 안으로 끌어와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문제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론조사 기관 사이의 어떤 편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이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여론조사에만 응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론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윤광일 후보님, 전현정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큼니다.

몇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두 분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OECD 국가 중에 공무원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공무원의 기본권이 정치적 중립과 그다음에는 헌법적으로서 개인으로서 참정권, 이 두 가지가 다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을 맞추기가, 고도의 어려움을 갖고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학자로서는 기본권에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전현정** 저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조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공무원들의 국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나라고요. OECD 국가가 아닌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유연하게 제한하고 있고 일본도 정치후원금이나 정당 가입은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카오투에 기사를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면 경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낮은 차원의 표현의 자유인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정치후원금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정당 가입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두 분은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허용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전현정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을 다 정리는 못 하면서 들었는데 요즘에 ‘좋아요’ 눌러서, 과거에 판사가 SNS 활동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기는 한데 ‘좋아요’는 좀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은.

○박정현 위원 거기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SNS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깊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SNS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 단계인데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후원할 수 있는 것, 정당 가입,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권을 하려면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개입의 역사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낮은 수준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낮은 수준이 어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표현의 자유.

○박정현 위원 표현의 자유 정도까지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지난 내란 사태에서도 부당한 명령이 공무원한테 떨어졌을 때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정치기본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시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시라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정 후보님께 여쭙보겠는데요. 지난해 대선 때 소위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유령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사전투표나 투표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29일 날 대전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6명의 신원불상인들이 투표 참여 유권자를 향해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투표를 못 하고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것은 서울의 대림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한외국인은 대선 때

투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중국인이시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한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 후보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법관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평온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선관위 자체적으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법 개정안도 냈는데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투표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했을 때는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데 투표행위 제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도 바뀌야 될 것 같고. 공명선거실천단이라고 행정안전부에 꾸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6·3 지방선거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일 후보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인데요,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업으로 사이브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과 트위터와 관련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PPT에 보시는 것처럼 가짜 계정이 29%고 14%는 선거 불신을 확산하는 계정인 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계정 중에는 가짜 계정 비율이 30%로 높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확산하는 계정 비율도 33%에 해당되고.

다음 PPT,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되면 면밀하게 이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현 위원**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도 굉장히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선거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헌법적인 방해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최근에 SNS를 통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일 후보께 먼저 질의할 텐데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두 분 모두 선관위원을 맡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부담은 많은 자리여서요. 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윤광일 후보님, PPT 봐 주시면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앞서 후보께서는 선관위 제1 가치를 공정과 중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러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또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중립성, 이게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겠지요,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 후보자께서는 펜앤마이크라는 매체를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저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꼼꼼히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제목 정도 본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펜앤마이크라는 매체는 내란을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해 가지고 심의 제재 결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펜앤마이크의 대표분이 계시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음 PPT 보시면 어찌 보면 선수가 심판이 돼서 경기를 관찰하고 경기를 꾸려 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매체의 선거 보도를 심의하는 곳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데 그 위원 중의 한 분이 매체의 대표시고요 그 매체는 아주 문제가 많은 보도들을 제 생각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선관위의 제1 가치, 공정과 중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 직책 자체가 관여 내지는 그 자체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펜앤마이크가 예컨대 선관위에서 심의하는 인터넷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우를 범했을 때는 여기 계신 후보자 두 분께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현정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PPT를 따로 띄우지는 않는데, 2024년 4월 총선 직후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관저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등을 불러서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이 부정선거에 있다. 그래서 계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된 상황입니다.

전현정 후보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비상계엄 선포 9일 뒤에 윤석열 씨는 대국민담화에서 본인이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당시에 ‘아니다.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해킹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러면 후보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대리 윤건영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선거는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선관위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되는데요.

2023년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중앙선관위에 보안컨설팅 설명회에 참석하라라는 공문을 내면서 컨설팅을 받아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선관위는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에 항의 방문하고 비판 성명을 내면서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수용했습니다.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 선관위 선관위원이었다면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는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가치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왜 2023년 5월 사건을 예를 드냐고 하면 이 사건 이후로 윤석열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열 차례가 넘는 선관위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A 보고라고 해서 대면보고까지 받습니다.

그래서요 국정원이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취약점 180여 곳 중에서 170곳, 즉 95%가 조치 완료됐다고 하고 나머지 10곳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다, 예산이 들어가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총선도 부정선거 때문에 졌고 불법계엄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리 미흡 때문에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선관위가 조금 더 단단해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두 분 후보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께서는 선관위원으로 비상근이시기는 합시다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집권세력이 선관위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는 개입하려고 했을 때

선관위 위원들이 단단히 버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전현정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말씀하신 내용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윤광일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지켜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대한민국 선거 관리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계적으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도 그렇고, 선거 관리도 그렇고. 그런 데 괜히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선관위를 이끌어 가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의 김성희입니다.

재외국민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윤광일·전현정 후보님,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김성희 위원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김성희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인정에 그치고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세 번의 대선, 총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외선거자를 20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200~250만 정도에서 80%가 유권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추정치인데 그중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매우 낮습니다. 10%, 4%, 8% 지금 PPT 보시는 대로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 국내 거주하고는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저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씩 답변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부터요?

○김성희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아무래도 이게 투표를 하는 제도적인 장벽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일단 내국인,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신고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몇 시간 동안 혹은 그 전날 가서 호텔에……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 잠정적인 선거권자에 대비해서는 낮지만 신고를 한 분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투표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는 중앙선관위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의사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증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한 분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관심도도 좀 높이고 그래야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재외국민선거가 다시 재개됐던 2010년에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표참여운동을 저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12년 대선·총선에서 해 봤는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70만 명 정도 한국 사람들이 산다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1만 명이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1만 명이 등록한 것에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훨씬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중에 투표율은 80%가 넘어서 하려는 사람만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접근성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25년 대선 기준으로 118개국에 223개 재외투표소를 설치해서 국가당 평균 1.89개 정도 한 겁니다. 3만 명 이상이면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턱없이 모자라고요.

25년 대선 당시에 선관위가 실시한 재외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31.9%가 투표소가 멀어서 방문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재외동포청이 지난 20일에 했던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재외국민들이 투표소가 멀다는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2010년보다도 10년이 지났는데도……

한번 보시지요.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이주희 퀸스타운 한글학교장. 뉴질랜드가 남섬·북섬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남쪽의 맨 끝에 있는 퀸스타운도 굉장히 크고 변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투표소가 북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못 가고 비행기를 타고 500km를 날아가야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에 거주하시는 신주선 씨 같은 경우에는 윈난성에서 사천성까지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백 km를 달려가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김정배 총연합회장님은 아프리카는 더 찬밥이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고요.

캘리포니아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라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 넓은 땅에 딱 네 군데만 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면 LA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구역이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이지요. 차를 몰아서 8시간씩 가야 겨우 투표소에 도착하는데, 우리나라 10배 면적에 달랑 투표소가 4개 있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께서 추가투표소 확대를, 현재 기존 3만 명당 1개소 인 것을 2만 명당 1개소로 바꾸자고 내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두 분 한말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부터?

○김성희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말씀드린 대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줄이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또 비용의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비용이 헌법을 앞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김성희 위원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OECD 38개국 중에서 지금 투표소에 직접투표만 하고 있는 나라는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일곱 군데밖에 안 되고요. 28개국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든 관련된 판정이 나왔지만 우편투표가 광범위한 투표 참여를 보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통선거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합헌 판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외국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방금 사례도 보셨듯이 면적당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투표에 참여하기 쉽고, 외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소를 넓히기 어려우면 최소한 우편투표를 좀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게다가 2022년 선관위가 자료 조사한 걸 보니까 재외공관이 발송하면 열흘 내로 도착하는 확률이 발송이 73%, 회송이 86%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재외공관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타국에서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 분씩 각각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우리나라 우편제도는 상당히 신뢰하지만 다른 나라의 우편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투표권, 선거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는 부분이 대리투표가 혹시 되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 한 결정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 어떤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를 양부남 위원입니다.

두 분 선관위원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현정 후보님은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오늘 날카롭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신상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광일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분 다 신상을 그렇게 검증할 것은 없는데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윤광일 후보님 기억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양부남 위원 이게 드림푸드코리아하고 소울푸드코리아를 채무자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매월 1%, 연 12%, 매월 12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87만 원을 직접 받고 33만 원은 원천징수를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1년 씩 2회까지 연장한다. 통상적으로는 변제기한이라는 게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제기한이 연기가 되는데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제기한이 연장이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변제기한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제기한이 연장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저한테는요. 그런데 이분이 제 친한 학과 선배이고 또 유학 때도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어떤 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써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도움을 주는, 신뢰를 하고 도움을 주는 선배라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안 읽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읽어는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개별 단어 하나, 하나……

○양부남 위원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제기한이 연장된다, 그렇다 치고 잘 몰랐다 칩시다.

이 사람은, 채무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34평 집입니다. 실거래가 70억 집입니다. 재산을, 70억 집을 가진 사람이 1억 2000만 원의 돈을 빌려서 2023년부터 매월 1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다? 이게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글썽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문제를 듣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한 선배라서 제가 꼼꼼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못 했던 거는 저의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취지는,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가 위장한 것 아니냐, 재산을, 그게 굉장히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이런 통상적인 차용금 관계가 아닌 것에 의심이 강하게 갑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제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인지, 채무자라는 사람이 70억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1억 2000만 원 돈을

여기서 빌려 가지고 지금 매월 1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면에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 그렇다면 1억 2000만 원 원금을 어느 계좌에 넣어 줬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여기 선배가 불러 준 계좌번호에다 제가 넣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양부남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다음에 매월 120만 원씩 이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자, 원천징수 빼고 받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계좌로 받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계좌로 받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누구 계좌로 받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양부남 위원 원천징수 33만 원씩 매월 냈다는 건 입증이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그 요청을 했습니다, 선배에게.

○양부남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선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천징수……

○양부남 위원 33만 원씩 원천징수 내는 자료는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87만 원씩 받았는데 33만 원씩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는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그 선배가 가지고 계십니다.

○양부남 위원 확인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그 원천징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지금 의심하면, 저는 강한 의심이 드니까 과연…… 돈을 입금했던 계좌, 돈을 이자를 87만 원 받았던 자료, 그다음에 33만 원씩 원천징수 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또 하나, 우리 후보자님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이 아주 많아요. 주식은 많은데 대부분의 주식이…… 6억 7000만 원 정도, 6억 7250만 원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6억 칠천 얼마의 주식에서 6억 2000만 원 이상의 주식이 미국주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고환율을 방어하고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지양하고 국내에, 국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방

침과는 어긋나는 건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경제, 그러니까 저희 배우자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서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부남 위원 이것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 같은데 앞으로 주식 줄이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다음 우리 전현정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배우자께서 대법관 시절에 SK 사외이사를 맡으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양부남 위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배우자하고 상의했습니까,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그 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의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남편의 직업 때문에 제 자신의 커리어를 또 많이 포기한 부분이 있고, 제가 회사법 전문가로서 그 회사 운영에 직접, 회사 운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외이사로 근무하시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결정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가 있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회사의 의견과는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이제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게 되면 또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먼저 우리 윤광일 후보자님, 전현정 후보자님 다시 한번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 윤광일 후보자님, 현재 한국정당학회 회장님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2022년도에 역임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이 명단에 현재 한국정당학회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와중에 이런 실수는 한 글자이긴 하지만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사무처분들 신경 똑바로 써 주십시오. 이것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윤광일 후보자님, 보통 뉴스를 뭘로 보시나요? 어떤 매체를 통해 보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보통은 인터넷 기사하고요 그다음에 밤에 하는, 정기 시간에 하는 뉴스들을 꼼꼼히 챙겨봅니다.

○모경종 위원 방송 뉴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들 기사를 보시는데 아마 전현정 후보자님도 비슷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휴대폰으로 봅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지면, 그러니까 신문 기사 그리고 방송 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선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윤광일 후보자님, 지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게 지금 설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설치……

○모경종 위원 설치를 언제 하게 되어 있는지……

상시 설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상시 설치로 제가……

○모경종 위원 예, 맞습니다. 상시 설치입니다.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선관위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선관위 소관이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선거……

○모경종 위원 공직선거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공직선거법은 그렇습니다만……

○모경종 위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언제 설치되느냐를 여쭙봤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모경종 위원 이게 상시 설치가 아니에요. 상설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선거 보도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방송이나 기사 관련된 내용은 선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아닌 기간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선관위 산하에 설치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데는 비상설이고 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요. 방미통위의 산하로 있고 또 그 안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전현정 후보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모경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정한 심판을 봐 주셔야 될 중앙선관위에서 전면적으로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텐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자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윤광일 후보자님이 학자 출신이신데 예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신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고착화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닮아 있다’. 이런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생각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모경종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양극화를 계속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은 의원님들, 정치인들 중심으로 서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소통을 안 하는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소통 과정에서도, 몇 안 되는 소통에서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지자층, 국민들께서도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동의합니다.

○모경종 위원 이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던 기관이 어디냐? 바로 선관위입니다. 부정선거 당연히…… 아까도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나 허위정보가 계속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포되니까 부정선거 팩트 체크 페이지를 선관위에서 운영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힘들셨으면.

그런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이미 여러 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설명, 검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을 낳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 또는 다짐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연구를 미력하나마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후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후적인 가짜뉴스 처방보다 사전적인,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전현정 후보자님, 건전한 문제 제기와 허위조작정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선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허

위정보,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확실한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기만하는 정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전현정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투·개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단순한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좀 지나치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의혹을 해명하려고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중 위원 어떤 분께서는, 끝장 토론을 하면 마치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정당의 당대표께서도 그러셨는데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 이후에 뭔가를 불식시키고 불신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장 토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앙선관위, 선관위가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여 주느냐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앞으로 국민들께서 공정한 선거를 믿게 되고 국가의 시스템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모경중 위원 앞으로 중앙선관위의 운영에 있어서 본인들의 그동안 학자로서 또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역량을 많이 녹여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두 분 후보자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기 상임위 회의장으로 오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정문으로 오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오전에 말씀이십니까?

○정춘생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정춘생 위원 정문으로 올 때 뭐 보이는 것 없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오전에는 없었는데 오후에는 밑으로 지하로 와 가지고 못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오전에 없었을까요?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냐면 옆에 앉아 계신 용혜인 위원님도 포함돼 있는데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4개의 정당이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8일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모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모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정춘생 위원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선관위 후보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실무자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18일째 농성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오늘은 3보 1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윤광일 후보님, 제가 인사말씀 3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지역 선거 관리에 있어서 ‘정치경쟁의 공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선거제도와 선거 관리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 민주주의 기본 구조와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러면 소수정당들이 얘기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겠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모른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죄송합니다.

○정춘생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 해서 했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를 지금 노정하고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 볼게요.

무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초의원 단계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아니요, 광역도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해서 489명이에요. 당선자 비율로 치면 12.5%입니다. 이것 선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이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의 자치권은 저는 주민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의원들이 있고 그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정당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거나, 지금 지방의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견인해야 될 지방의회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PPT 한번 보실게요. 넘겨 주시고요.

무투표 당선 볼게요. 지금 서울시 양천구만 해도 기초지역구에서 16명을 뽑는데 14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이것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천구 구민들은 투표도 없이 지방의원들을 강제적으로 선출한 거예요, 본인들은 투표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양천구는 다 2인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해서 그분들만 당선된 거예요, 무투표로. 이것을 선출직 공직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명직이지. 서울시 송파구도 볼게요. 여기도 23명 중에 13명이 무투표, 57%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선거 관리를 관장하는 선관위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아까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제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 놓고서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무투표 당선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당선하는 방식을 바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1인……

○정춘생 위원 후보자님, 그러니까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들,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한꺼번에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더라도 이번에는 성과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제도가 계속 안착이 되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한 지방의회여야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을 할 것 아닙니까.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의장까지 상임위원장까지 한 정당에만…… 이게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지방자치의 재난상황이라고 봅니다. 헌법적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도 그 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선출자의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최악의 불비례성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63%의 득표율로 95.74%의 의석을 차지했어요, 거의 100%. 그리고 반면에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48.81%의 득표율로 87.23%의 의석수를 차지합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제도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후보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선관위에 임명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도 그 불비례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 임박해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먼저 이 의제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춘생 위원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추가질문 없는 것으로 합시다.

○정춘생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1분만 더 하십시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바꿀 수는 없을 거다, 바꾼다고 해도 양당 독점 비율이 비슷해질 거다, 당해연도에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제도를 고쳐 놓고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그 부분 포함해서 저는 불비례성을 낮추는 방향에 있어서는 정원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임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30년 시행이 됐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고 제대로 된 주민주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의 문제를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도를 고치고 다음 선거에서 적용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먼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두 분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각각의 후보자님들 언급하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받으시는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일 후보자님, 뒤베르제의 법칙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당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부르고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체제를 만든다는 어떤 정치학에서의 기본적인 명제인데요. 이 서면답변을 통해서 현행 제도가 안정성에 비해서 비례성이 소외되고 있어서 비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현정 후보자님도 중대선거구제가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조율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국회에서 정하면 입법정책적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후보자분들께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최종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관위원으로서의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내는 데에 좀 역할을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두 분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아무래도 제가 정치학자이고 또 선관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데 의제를 제가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학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소홀하게 해 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어떤 입장을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뭔가 관철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가 나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현정 후보자님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전현정** 선거구제는 유권자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윤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윤광일 후보자님,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예, 위원님의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제가 지역을 다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군수랑 군의원들이 다 한 정당 소속이어서 가지고 4년, 5년 동안 군정 질문 한 번 하지 않는다,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수한테 따져 묻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군의원들이 그런 질문 한 번을 하지 않는다는 성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비후보가 명함을 나눠 드리고 지역주민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 지역이 늘 무투표 당선으로 광역의원이 당선되던 지역구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어르신이 ‘아, 우리가 시의원도 뽑는 거였냐?’라고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복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민의를 온전히 담아 내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선관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만 목소리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정말 옳은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내 주셔야 한다면 말씀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기여한다라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단점을 들면서 선거비용 증가, 선거 불복 그리고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유보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헌법 개정,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법률로 처리해도 대통령선거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선거는 오늘 논외로 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 없는 지자체장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여전히 서면답변과 같은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지방선거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선거제도의 어떤 실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선투표에 대해서 장단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몇 개 지방에서의 그런 적용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정당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의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까지 도입하는 그런 식의 점진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옹혜인 위원 일단 시범 도입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의 답변이시고요.
혹시 전현정 후보자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는 결선투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찬반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2차 투표에 대한 결과가 불일치하고 또 무투표 당선제를 채택한 것이 선거 효율화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저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효율성의 논리가 국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거비용 이런 측면에서는 선호투표제라거나 아니면 즉시 결선투표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식으로 말씀하신 비용이나 효율성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할 만한 합당한 명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선투표제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난 당대표 시절에 함께 논의하고 약속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2015년에 이미 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출도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냈었고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 왔는데요. 두 분이 후보자를 벗어나서 위원이 되신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끝까지 제대로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국민들의 대표자가 최소한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향의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두 분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정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신뢰를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뢰'라는 책 한번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뢰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선거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론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보니까 1963년에 중앙선관위가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후인 1967년 총선에서 DJ 대통령께서 목포에서 출마하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저 사람이 자기의 최대 라이벌이 될 줄 알고 가서, 국무회의도 목포에서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낙선을 못 시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절대권력을 가지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사용했겠지만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말하는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이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절대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지키면서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현정 후보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에서 사소한 실수는 했거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이상식 위원 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신뢰를 제고할 방안은 모색해야 되는데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헌법 수호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여러 차례 그게 좀 부족했다. 첫 번째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이 자기가 봐주고 싶은 후보자들 찾아다니면서 정책간담회 하고 후보자 공약 그대로 카피해서 발표하고 예산 수백조를 남발했거든요. 이럴 때 선관위에서 선관위원님들이—헌법기관이잖아—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에 슬그머니 경찰에 넘겨 버렸어요. 헌법기관에서 못 하는 일을 경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두 번째,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선관위는 침탈이 됐잖아요. 다른 기관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 다음 날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그다음 날 아침 정도에는 선관위에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성명이라도 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며칠 후에 행안위에 오셔서 가지고 비로소 사무총장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은 했어요. 만지지탄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기에 선관위원님들이 실무 같은 것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이런 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 수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짚막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지극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차원

에서도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보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지극히 폐쇄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최근에 내가 들어보니까 행정고시 공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래서 헌법기관이라는 하에 감독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비리 같은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선 선관위원님들이 기왕에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고 하니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굉장히 좀 강화하셔야 된 다.

채용비리라는 게 생기니까…… 채용비리가 있다고 해서 선거 관리가 불공정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방적인 감사제도 도입하고 이런 제도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관찰자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면서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 볼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보니까 거기에 선거제도와 국민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대구·경북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합쳐서 25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 잡아도 대구·경북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민주당이 20% 이상을 득표하거든요. 그렇다면 5분의 1이니까 최소한 다섯 석 이상의 의석을 배출해 가지고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한참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목소리를 선관위 내부에서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게 필요한데요 전 사무총장님들 말씀 들어 보면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정말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입장을 정하고 자기들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입법제출권이 없는 건 알지만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대신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선거제도와 국민의 대표성, 지금 야당 위원님들, 정춘생·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주권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그걸 국회에 의견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윤 후보자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여러 기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걸 주장하는데 뭐냐 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관위에 있으면 광역의원도 시도 단위 선관위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의원도 시군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합성이 맞고 가장 잘 아니까 또 가장 헌법기관이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건 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건 하여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용역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마친 결론이 서면 그걸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제가 만약에 위원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사항 제가 적어 놔습니다. 하나하나씩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저도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소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 한 3분 정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5분 할 사람 5분 하고 3분 할 사람 3분 하고.

○위원장 신정훈 그럴까요? 최소한 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몇 명 없으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하나만, 한 이삼 분만 할게요.

○이광희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속 손을 들라니까 계속 손을, 내가 들어 주시라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세 분이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고동진 위원님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먼저 전현정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고동진 위원 최근에 재판소원, 이른바 4심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이게 파렴치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선거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고동진 위원** 이게 현재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루어지면 재보궐선거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큰 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서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취소하고 재심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현실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고동진 위원** 문제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반면에 재판소원은 그 재보궐선거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이런 것의 법적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선거제도 운영의 책임기관인 선관위에서는 의견 조화가 없이, 일단 일을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합니다.

○**고동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단은 법제과에다가 문의한 PPT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유야무야됐는데 양문석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에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다시 취소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선관위 내부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그 부분도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고동진 위원** 이 PPT가, 선관위 관리위원한테 이것을 사전에 문의를 했는데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내부 안건으로 조속히 상정을 하셔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되고 그러시면 이 안건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서,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걸 분명히 충돌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고동진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물론 안 지켜진 경우도 몇 명 있었지만 선거법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의 경우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행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정훈 위원장, 권철승 위원과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가처분,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소원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거나 가처분

결정과 다른 재판소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퇴직이나 이런 부분 관련에서는 국회법 관련 사항이라고 제가 언뜻 알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속하는지……

○**고동진 위원**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일정 금액 이상 금고형을 받게 되면 일단은 국회의원직을 떠나야 되고 재보궐선거로 연결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겁니다, 제가 여쭙본 것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그러면 제가 위원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이미 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봐 주시고 내부에서 검토된 내용을 의원실로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두 분께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 등록시점이 시장, 시의원, 도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가능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군수와 군의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등록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지만, 깊게는 안 해 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라고 하는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단체장에 대한, 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60일로 했고 다른 분들은 90일로 했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관된 날짜를 정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광희 위원** 제가 어디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선관위 측에서는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괴산군이 3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보다 2배 더 큰가 그렇습니다. 인구 3만 명 쫓아다니려면 서울시 전체를, 군의원이 어마무시하게 다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꼭 인구가 많은 곳, 집중돼 있는 곳하고 넓어서 지금 봄날 농사 짓는데 저 몇 분 보이면 열심히 쫓아가서 인사, 산자락까지 쫓아다니는 것하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동일하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런 의견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이게 지방과 관련돼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가 확실한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알고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것은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헌법 115조에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 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가 있고 1항의 지시를 받은 당 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공직선거법 제5조에는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관위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시할 수 있고 응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당히 너무 경직되고 완고한 조항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공공기관이나 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도 협조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지금은. 일반 공무원들이 잘 따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권칠승 위원,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공무원이 선거 업무 중에 투표함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넣어서 구속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또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늘 회자가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 당시에 용인에서는 수지구 성북동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내부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단체가 신고를 해 가지고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을 고발을 해서, 사실 이 공무원은 1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판단이 되긴 했는데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용인시 공무원들 그때 당시 약 1385명이—지난 지방선거지요—선거사무 종사를 거부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용인 사례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직접 확인을 한 건데 선관위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법적인 조력이라든가 이런 게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투표관리관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일반 사무원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선관위가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법률서비스도 하고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해야 원활한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당도 굉장히 적어서, 최근에 조금 올리긴 했는데 아직도 사실 수당이 꼭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유인이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 부분도 조금 더 현실화를 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선거사무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선관위 직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관리관이 1만 7863명이고 사무원은 23만 898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많은 숫자이기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선관위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돼야 그런 거지 지금은 일체 서비스나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원 되시면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 같은 것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유념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전현정 후보께 수임 건수와 수임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잠시 말씀드린 게 변호인으로 관여한 판결 현황이나 후보자가 직접 대리한 사건과 판결문 일체는 후보자님께서 법원행정처에 오케이를 하셔서 제출하라고 승낙을 하셨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이 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고 하여튼 9년 동안 로펌에 계시면서 수임 건수 그리고 수임료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어려운 자료라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서범수 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요, 벌써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윤광일 후보자님,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셨고 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하였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하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수준만큼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몇 점, 백 점 만점에 몇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백 점 만점으로 하면 저는……

○서범수 위원 백 점 만점에 몇 점?

과락 수준입니까, 과락에서는 조금 더 올라간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과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범수 위원 과락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한 75~80점 정도.

○서범수 위원 그러면 과락은 아니라고 보시고요 그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좀 더 안정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관위원이 되시면 노력을 해 주십사……

윤 후보자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선관위와 관련해서. ‘최대 위기 선관위, 어떻게 개혁하여야 하나?’ 이런 지론을 두면서 그 당시에 선관위 상임위원 꿈수 연임, 소쿠리 투표, 고위간부 자녀 특혜 의혹 등 선관위의 도덕적 불감증을 질타하면서 내부조직 혁신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서범수 위원 내부조직 혁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내부의 혁신방안이요?

○서범수 위원 예, 이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그게 제가 2022년도에 쓴 글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서범수 위원 경력직 채용 절차를 완전 공채로 하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선을 개방형 경쟁모델로 하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유효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지금도 말씀 주신 것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선관위원 되시면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원 상근 문제인데요. 전현정 후보자님께서도 판사 시절에 위원장을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전현정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비상임을 하시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솔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전현정 제가 생각할 때 선거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이나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이 거의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로 비상근으로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전현정 예.

○서범수 위원 이걸 뭔가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 후보자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제가 그때는 특히 선관위의 경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인식했을 때의 문제 제기였는데요.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는 문제는 저는 그래도 법관의 어떤 고도의 직무 독립성 그다음에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직위의 신분제 계신 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외적 감시도 제도적으로 대폭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후보자 윤광일 지금 일부는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제가 도입이 돼 있고요. 여기에 내부 위원들도 있지만 외부의 위원들을 좀 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 그래서 후보님이 선관위원으로 되시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보고서라든지 연구서가 있으면 좀 주셔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하나가 뭐냐 하면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이야기거든요. 지금 본투표하고 사전투표가 거의 50, 50 정도로 비중이 비슷합니다.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에서 이야기는 그러면 사전투표를 본투표에 준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저분들이, 몇몇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야 돼,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인쇄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광일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앞으로 주의 깊게……

○**서범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편의를 본투표 때는 하거든요. 사전투표 때는 교통편의를 안 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투표 때는 투표소가 더 작아요. 더 멀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투표 때만 교통편의를 제공을 하고 사전투표 때는 교통편의를 안 하는,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만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제가 위원이 되면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전현정 후보님은 수임 건수하고 수임료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제가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시다. 최근에 작년 7월 말에 법무법인을 옮기면서 송무변호사로 일을 시작했고 그 전에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극히 자제해 왔습시다. 파트너 변호사로도 일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대형 로펌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업을 하지 않았습시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또 고문변호사로서 송무팀에서 일하지 않고 자문팀에서 일을 해 왔습시다. 그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더 부담 없이 내 줄 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후보자님,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부담 없이 내 주면 되지요. 내 주십시오, 내 줘야……

.....

○**위원장대리 윤건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 두 분에게 정책에 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방식이라든지 발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난번 20대 대선 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한 방식이 대부분 ARS RDD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2~3%의 응답률을 가지고 이것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응답률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론조사 이게 선빵입니다. 응답률이 2~3%밖에 안 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여론을 계속 만들어 가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율을 비교해 보니까 응답률 5% 미만의 여론조사 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20대 대선 때는 응답률 5% 여론조사, 전체 발표의 23.4%였습니다. 22대 총선 때는 29%, 21대 됐을 때는 31.5%나 됐습니다, 응답률 5% 미만인 것이. 응답률 5% 미만의 방식은 대부분이 ARS RDD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정한 응답률 이하가 되면 발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게 우리 정당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응답률 아주 저조한 것을 계속 발표하게 된다면 이것은 여론의 차이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로서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현정 후보님과 윤광일 후보님 두 분 말씀을 듣고 싶고, 특히 전현정 후보님은 지금 중앙위 여심위원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양부남 위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낮은 응답률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공표에 대한 어떤 우려심, 위원님의 우려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하지 않는데 표본, 대표로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점 있고 결과를 또 왜곡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저에게 공감하니까 일정한 선을 그어서 몇 % 이하가 되면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을 한번 중앙선관위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면 어떨까 그 의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본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조금 도입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위원님의 말씀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윤광일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저는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응답률이 낮은 것이 공

표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선관위에서 선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업계에서는 이미 그 공신력에 대해 심대한 문제점 제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히 미등록 단체가 공포를 하는 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두 후보자님, 선관위원이 되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도 있지만 응답률을 몇 % 이상으로 제한을 하시는 걸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전현정 후보자님, 지자체 선관위 위원장도 하시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도 역임을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여론조사 두 개가 있잖아요, 공표 목적의 조사와 비공표 조사. 여심위에 공표 조사는 등록해서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비공표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의뢰자가 누군지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샘플이 조작되거나 음성적인 자금으로 운영돼 가지고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입법들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공선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논의 중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입법과 별개로 선관위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조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문제되는 것이 실시 사전신고가 있습니다. 실시 사전신고는 공표나 비공표 모두 문제되는데 면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 또는 일정 규모의 인터넷 언론사 이런 기관이 할 경우에는 실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설문지나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심의위에서 스크린, 모니터할 기회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언론사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기 때문에 지방 언론사와 공모를 해서 실시 사전신고 의무를 피해

가고 그런 과정에서 탈법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한 경우라서 실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기관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최근에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판결의 핵심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명태균 씨와의 공식적인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라는 편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으니까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제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입법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하고 입법이 통과되는 것하고 별개로 선관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도 내가 똑같은 얘기 했는데 선관위가 법규대로 한다,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도 그렇고 비공표 여론조사 명태균 관련 사건이 터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 비공표 여론조사 선거 개입 이런 유사 사례 같은 걸 선제적으로 차단할 행정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다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 또는 어떤 것은 제도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규제가 너무 많은 부분은 완화해야 하는 노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표 목적의 조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있다 그러면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을 정치자금법 52조 2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비공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음성적 거래에서는 그러한 제출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선법에 있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서 하는 조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비공표 여론조사의 위법사항이 신고되는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선관위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 때, 이게 입법으로 해결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광일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윤광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긴 시간 동안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날카로운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제 소신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가 평생 학문으로서 연구해 온 민주주의와 선거의 가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갖는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와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학자로서의 양심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선거문화가 더욱 공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정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전현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 현안으로 분주하신데도 제 인사청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질의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려고 애썼는데 미흡했던 부분은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청문 과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기대와 우려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위원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쌓아 온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모든 선거사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시는 경우 보다 공정하고 또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성곤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

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하였다가 추후에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합의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윤광일과 전현정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현정 후보자 보고서에 문구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로 수정하겠습니다.

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33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87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고생해 주신 국회 공무원, 보좌직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중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재관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출장 위원(1인)

박덕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출석 공직후보자

윤광일 전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정책기획관 이지성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최인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청장 김승룡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구동욱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보건안전담당관 정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국장 김인수

법제국장 박세진

조사국장 조봉기